특허출원등록절차

(실용신안의 경우 1999. 7. 1부터 선등록제도로 변경)

■ 일반적인 절차

선등록기술조사 - (출원인등록) 및 출원서작성 - 접수 및 수수료납부- 출원번호통지서(또는 접수증) 수령 - 출원공개 - 심사 - 등록료납부(총 27개월 정도 소요) ※우편접수시 절차임※

1. 선등록기술조사 :
   동 발명의 선출원·등록 여부를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, 특허청 서울사무소,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무료로 확인가능하며 특허기술정보센터(www.kipris.or.kr)등에서는 유료회원제로 온라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(특허검색문의처 : 특허도서관 042-481-5128/30)

2. 출원서 작성 :
   출원서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인도 기술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코자 하시면 이미 등록된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이용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.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변리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. 구비 서류 :
   출원서 정본 1통 부본 1통(요약서, 명세서, 도면 등 각 2통),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증명서류 1통 등

4. 수수료납부 :
   우편접수시에는 소정의 수수료(별지자료참고)를 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고, 방문접수시나 온라인출원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 ※ 우편접수처 :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특허청장 우. 302-701

5.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:
   접수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나면 우편으로 출원번호통지서를 송부하며 이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 하시어야 됩니다.

6. 출원공개 :
 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. 예외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3-4개월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7. 심사청구 및 심사 :
   특허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사정 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. (평균 27개월 소요)